

무주초등학교 학교규칙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치) 우리학교는 <u>전라북도</u> 무주군 무주읍 향한로 43(읍내리 343번지)에 둔다.	제3조(위치) 우리학교는 <u>전북특별자치도</u> 무주군 무주읍 향한로 43(읍내리 343번지)에 둔다.
제8조(학급편제) ② 우리 학교의 학급편제는 <u>전라북도교육감</u> 이 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8조(학급편제) ② 우리 학교의 학급편제는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이 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① 우리 학교의 학생정원은 <u>전라북도교육감</u> 이 정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① 우리 학교의 학생정원은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이 정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12조(출결상황 관리) ② <u>우리학교교의</u> 등·하교 시간, 수업시간은 매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다.	제12조(출결상황 관리) ② <u>우리 학교의</u> 등·하교 시간, 수업시간은 매 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따른다.
제13조(개인 교환학습) ①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u>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u>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 개인 교환학습에 관한 사항은 <u>전라북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③ 개인 교환학습에 관한 <u>전라북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조(개인 교환학습) ①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권장 기간으로</u> 운영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② 개인 교환학습에 관한 사항은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③ 개인 교환학습에 관한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조(단체 교환학습) ①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u>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u> 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단체 교환학습에 관한 사항은 <u>전라북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③ 단체 교환학습에 관한 <u>전라북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조(단체 교환학습) ①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권장 기간으로</u> 하고,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단체 교환학습에 관한 사항은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③ 단체 교환학습에 관한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15조(교외체험학습)</p> <p>①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u>연 15일 이내</u>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p> <p>②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u>전라북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p> <p>③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u>전라북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15조(교외체험학습)</p> <p>①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권장 기간 이내</u>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p> <p>②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p> <p>③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u>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u> 체험학습 추진 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16조(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p> <p>① 학생 평가 및 학업성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u>전라북도</u>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별도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p>제16조(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p> <p>① 학생 평가 및 학업성적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u>전북특별자치도</u>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별도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p>제20조(전학)</p> <p>⑥ 초등학교의 장은 <u>제6항에도</u>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제25조의2제1항에</u>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p>제20조(전학)</p> <p>⑥ 초등학교의 장은 <u>제5항에도</u>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에</u>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현 행	개 정 안
<p>⑦ 학교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p> <p>⑧ 학교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⑦ 학교장 및 교육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p> <p>⑧ 학교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제3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p> <p>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p>	<p>제3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p> <p>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p>
<p>제32조(학업중단숙려제)</p> <p>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p>	<p>제32조(학업중단숙려제)</p> <p>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p>
<p>제39조(학교자치기구)</p> <p>④ 각 자치기구의 조직, 권한, 심의에 관한 내용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따른다.</p>	<p>제39조(학교자치기구)</p> <p>④ 각 자치기구의 조직, 권한, 심의에 관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를 따른다.</p>
<p>제40조(교무회의)</p> <p>⑥ 교무회의의 기능 및 운영원칙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를 따르며 별도의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p>제40조(교무회의)</p> <p>⑥ 교무회의의 기능 및 운영원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를 따르며 별도의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